

2021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단체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가의 미술품 판로개척 지원 및 대국민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공모개요 ■ 공모명: 2021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단체 공모

☞ ‘작가미술장터’ 란?

2백만 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**대안적·실험적** 성격의 미술장터

■ 추진목적

- 직거래 미술장터를 개설하여 **미술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 지원 (작품판매 수익금 전액 해당 작가 지원)**
-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 및 **미술품 소장문화 확산 유도**
- **미술시장 관계자(화랑, 미술관 등) 교류 프로그램**을 통해 기존 시장체계로 진입 지원 강화
- 비수도권 **지역의 장터 활성화**

2. 공모내용 ■ 지원대상 사업기간: 2021. 6. - 10. (6-8월, 9-10월 기간 중 택일)

- * 단, 장터 운영 기간은 **주말 포함 5일 이상**(설치·철수 기간 제외)
- *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 가능하나, 한 지역에서 주말 포함 3일 이상 장터 운영 필수
- 신청자격: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미술장터 행사를 기획·운영하고자 하는 단체
 - *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
 - * 국비,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및 단체, 화랑 및 미술관 지원 신청 불가
 - * 미술품 매매, 미술품 대여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자체 공간에서 장터 개설 불가 (타 공간 섭외 시 지원 가능)

지원 불가사항

- * 화랑, 아트페어 등 타 마켓에서 전시했던 동일 작품 및 연작(시리즈) 작품 불가
- *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 작품 불가
- *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지원 불가

- 지원대상: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기획·운영하고자 하는 중·소규모 미술장터
 - ① 기획자 선임 필수(지원 단체의 대표가 기획자인 경우는 제외)
 - ② 중저가 미술품 구성(200만원 이하, 평균 30~50만원)
 - *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대형평면·입체·설치작품 가격 상한선 예외(단, 이 경우라도 센터와 사전협의 필수. 총 원화 작품작 수의 10% 초과 불가. 교부신청 시 대형평면·입체·설치작품을 포함, 60% 이상 확정된 작품작 리스트 제출 및 사업종료 후 최종 작품작 리스트 제출 필수)
 - * 원화와 함께 에디션(판화, 사진 등) 작품, **아트상품** 판매 가능
 - ③ **작가·미술시장 관계자(미술관·화랑 등)와의 네트워킹(초대) 프로그램** 기획·운영 필수
 - * 프로그램별 미술시장 관계자 참여 필수

☞ **'작가·미술시장 관계자(미술관·화랑 등) 네트워킹(초대) 프로그램' 이란?**

참여작가·미술시장 관계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술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를 초대하여 쇼케이스, 매칭 프로그램, 컬렉터 투어, 피칭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작가를 소개하고 장터를 프로모션 하는 자리(오프닝,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제외)

- 지원내용
 - ① 미술장터 및 부대행사에 기획·개설·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
 - ② **올해의 우수 장터 선정**: 차기년도 서울 외 지역에서 장터 개설 시 연속 지원
 - ③ 신진작가(화랑·아트페어 특별전) 전시 지원 공모에 장터 참여작가 포함 시 우선 선발 (미술공유서비스 연계)
- 지원유형 및 규모: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, 지원신청 사업내용 및 규모, 장터 공간 크기, 파급효과,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을 검토하여 심의 후 차등지원

<공모사업 구성(안)>

공모유형	지원규모	
[공모1] 서울 장터	4개소 내외	30백만원 ~ 5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
[공모2] 서울 외 지역 장터	9개소 내외	30백만원 ~ 7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

- ※ 공모 1, 2 유형 중복 지원 불가
- ※ 연속 3년(2018-2020년) 서울 지역에서 지원·선정된 장터는 [공모2]로만 지원 가능
- ※ 사업장소가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경우, **공모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장터만 지원**(예: 서울-대구에서 개최되는 장터가 [공모2]로 지원 시, 대구에서 개최되는 장터만 지원)
- ※ 상기 공모유형별 지원규모(예산안)는 변동될 수 있음

■ 심의 시 우대사항

- **지자체, 공공기관, 지역 내 민간기업 협력 시 선정 우대**
- **신진작가 발굴 전략 수립 및 신진작가 참여에 주력한 단체**
- **비대면 콘텐츠 활용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계획이 돋보이는 단체**
- 기존 미술 시장과 다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장터개설 기획이 엿보이는 단체
- 입체, 퍼포먼스, 미디어아트 등 비주류 장르를 마켓화 하는 단체
- 관객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**홍보마케팅 전략이 우수한 단체**
- 미술시장 관계자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**네트워킹 프로그램** 내용이 우수한 미술장터
-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단체의 경우 사업성과(예: 판매실적 등)가 우수한 단체
- 과거 유사사업 1회 이상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우대
 - *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단체의 경우 판매성과 반영 예정

■ 주요사항

<p>지원 항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술장터 및 부대행사 기획·개설·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선정단체 대표자 및 외부 기획자, 비상근 운영인력 인건비, 공간구성비, 프로그램 운영비, 작품포장 및 운송비, 홍보비,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,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 프로그래밍비 등 ※ 단, 미술장터 공간 확보 이후 교부신청 가능 ※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 ※ 그 외 지자체·지역문화재단·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
<p>지원 불가 항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○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○ 부대비용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(행사 케이터링은 행사대행용역비로 집행 가능) ○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 ○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
<p>지원 자격 제외 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비, 지자체비로 운영 되는 공공기관 및 단체, 화랑 및 미술관 ○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○ 지방자치단체(광역사도, 사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○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령」, 「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」 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○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○ 학교 단위의 졸업작품전 등
<p>선정 단체 의무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술장터 기획·개설·운영 ○ 장터 개설 시 카드 결제 및 무이자 할부 의무화 ○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, 맞춤형 강의,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 ○ 관람객용 <장터 리플릿>, <도록비평집> 및 홍보 기념품 제작 참여 ○ 장터 공식 SNS 플랫폼 가입 및 운영 참여 ○ 센터와 사전 협의 후 홍보물 제작 필수 ○ 모든 홍보/인쇄물에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작가미술장터 BI 등 센터가 지정하는 후원 표기 필수 ○ 장터기간 중 참여자 및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후 제출 ○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* 및 정산보고서** 제출 ○ e나라도움 시스템상 정산·실적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(* 회계검사 수수료는 <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>을 참고하여 보조금 예산 안에서 지출 가능)</p> </div>

3. 공모신청
기간 및
접수방법
-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1. 3. 29.(월) 17:00 마감
 - ※ 2021년 3월 29일(월) 17:00 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7: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
 - 접수방법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' 을 통해 신청
 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: 1670-9595
 - ※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 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
■ 제출서류 및 방법

no	제출서류	제출방법
1	[필수]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씩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
2	[필수] 지원신청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
3	증빙서류 ① [필수] 사업자등록증 사본 (jpg 또는 pdf 파일) ② [선택] 과거 유사사업 실적 증명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※ 선정단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, 참여작가 이력 증명(필수사항)
4	[선택] 기타자료 *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 (예: 공모사업과 유사한 기획사례가 담긴 포트폴리오)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
5	PT 자료	서류심의 이후, 면접심의 대상단체에 한하여 제출

※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

4. 심의일정
및
심의기준
- 심의방법: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심의(* **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심의 진행 가능**)
 - 심의일정

구분	일정	방법
접수기간	공고일 ~ 2021. 3. 29.(월) 17:00	e-나라도움 시스템 접수
심의 및 발표	2021년 4월 1주 ~ 4월 3주	전문가 심의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결과발표는 e나라도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(선정단체(자) 개별 연락)

■ 심의기준

영역	심의지표	착안사항	배점
계획 단계	사업계획의 구체성/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이 지원사업 목적(취지)에 부합하는가? ○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? ○ 사업내용 전략이 참신성, 차별성, 다양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는가? ○ 사업 내용이 개최 지역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? (지역 내 지자체, 공공·민간기관, 기업과의 협력 우대) ○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? 	30

영역	심의지표	착안사항	배점
집행 단계	신청자의 전문성/ 활동실적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신청 주체가 보여 온 이전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,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? ○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? ○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한 업무 배분 및 인력이 확보되었는가? 	50
	부대 프로그램 및 미술품 판매계획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대 프로그램 계획이 구체적이고 장터와 연계성을 가지는가? ○ 미술품 판매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 ○ 사업 홍보·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? 	
	온라인 활용계획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·판매 전략이 돋보이는가? 	
성과 단계	사업성과 기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에서 작가 미술품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여도와 국민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 ○ 향후 자생적 운영 가능성 및 연속성이 있는가? 	20
총 계			100

5. 추진절차



6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**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됨**
- ※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에 따른 오류발생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**마감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 바람**(마감 후 제출 불가)
- ※ 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·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함. 지원내용 관련 문의 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 및 시스템 내 [묻고 답하기], [오류신고] 등을 이용하기 바람
- 교부금 수령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(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
- ※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 시스템(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- ※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가능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- ※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※ 지원신청 예산 내 회계검사 수수료 책정 필수
- ※ 2021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의 경우, 자부담은 필수 아님
(단,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)
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유사 기획사례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 - 신청 사업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이 취소 혹은 축소될 수 있음
 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- ※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(예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(2021.1.5.) 제10조에 따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(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)를 해야 함
 - **예술인 고용보험제도** 도입에 따라 **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**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 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‘문화예술용역’ 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7. 지원문의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

02-2098-2927/2931 | vam@gokams.or.kr